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국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780
----------	-------

발의연월일 : 2025. 10. 29.

발 의 자 : 정성국 · 한지아 · 박정훈
진종오 · 안상훈 · 고동진
김 건 · 배현진 · 곽규택
유용원 · 김대식 · 김소희
송석준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천에서 중학생이 탄 전동킥보드로부터 2살 딸을 보호하려다 본인이 치여 중태에 빠진 30대 여성의 사례가 발생해 무면허 전동킥보드 운전 관련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됨.

현행법에 따르면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려면 16세 이상으로 제2종 운전면허 중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취득하여야 함.

그런데 개인형 이동장치는 주로 공유 플랫폼을 통한 대여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대여하는 경우에 이용자의 운전면허 보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무면허자나 16세 미만인 사람의 안전사고 및 불법이용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로 하여금 개인형 이동장치를 대여하는 경우 이용자의 나이 및 면허소지여부 등 운전자격을 확인하도록 하고, 이러한 운전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시·도경찰청장이 제공하는 운전면허확인서비스와 연계한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의 건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나아가 관련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에게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업자를 처벌하는 「청소년보호법」 및 「식품위생법」상 처벌례를 준용해 벌칙조항을 신설하고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하여 관련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하고자 함(안 제56조의4, 제137조의3 및 제149조의2 신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의3(제56조의4)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의3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의 의무

제56조의4(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 ① 유상으로 개인형 이동장치를 대여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이하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라 한다)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대여할 때 이용자에 대하여 운전면허 보유 여부 등 운전자격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는 운전자격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이용자에게 개인형 이동장치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자에 대한 운전자격 확인을 위하여 제85조의2제3항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이 제공하는 운전면허확인서비스와 연계한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운전자격 확인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과 제3항에 따른 운전면허확인서비스 연계 등 운전자격확인시스템 구축

-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7조의3(등록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하거나 사업계획 변경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56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이 조에 따른 사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사업정지 기간 중 사업 운영을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9조의2(벌칙) 제56조의4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운전 자격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운전자격이 없는 이용자에게 대여사업용 개인형 이동장치를 대여한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신 설></u>	<u>제4장의3 개인형 이동장치</u> <u>대여사업자의 의무</u> <u>제56조의4(개인형 이동장치 대여</u> <u>사업자의 준수사항) ① 유상으</u> <u>로 개인형 이동장치를 대여하</u> <u>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이하</u> <u>“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u> <u>라 한다)는 개인형 이동장치를</u> <u>대여할 때 이용자에 대하여 운</u> <u>전면허 보유 여부 등 운전자격</u> <u>을 확인하여야 한다.</u> <u>②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u> <u>자는 운전자격을 보유하지 아</u> <u>니하는 이용자에게 개인형 이</u> <u>동장치를 대여하여서는 아니</u> <u>된다.</u> <u>③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u> <u>자는 제1항에 따른 개인형 이</u> <u>동장치의 이용자에 대한 운전</u> <u>자격 확인을 위하여 제85조의2</u> <u>제3항에 따라 시·도경찰청장</u> <u>이 제공하는 운전면허확인서비</u> <u>스와 연계한 운전자격확인시스</u>

<신 설>

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운전자격 확인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과 제3항에 따른 운전면허확인서비스 연계 등 운전자격확인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7조의3(등록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하거나 사업계획 변경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56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이 조에 따른 사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사업정지 기간 중 사업운영을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

<u><신 설></u>	<u>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u>제149조의2(벌칙) 제56조의4제1항</u> <u>및 제2항을 위반하여 이용자의</u> <u>운전자격을 확인하지 아니하고</u> <u>운전자격이 없는 이용자에게</u> <u>대여사업용 개인형 이동장치를</u> <u>대여한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u> <u>사업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u> <u>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u> <u>한다.</u>
---------------------------	---